

## 投資株式에 대한 會計處理

金 潤 泰  
經 營 學 科  
(1986. 4. 30 접수)

### 〈要 約〉

企業相互間 投資의 活潑에 따라 投資有價證券과 有價證券, 關係會社有價證券(특히 關係會社株式)의 評價의 그에 따른 會計處理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本 論稿에서는 投資株式의 會計處理에 關係 美國의 文獻과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 및 聯結財務諸表基準 등에 內해서 研究하고 그에 대한 問題點을 검토하며 보완해야 할 點을 제시하므로써 基準樹立 또는 意見書 제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一般會計擔當者에게 會計處理上 發生할 수 있는 問題에 대해서 하나의 參考 指針을 제시하러는데 있다.

## The Accounting Procedure for Investments in Stock.

Kim, Yoon-Tae  
Dept. of Management.  
(Received April 30, 1986)

### 〈Abstract〉

As the investments of many enterprises become more active, much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evaluation of investments in securities, marketable securities, and securities of affiliated companies (including equity securities of affiliated company), along with its resultant accounting procedure.

This paper aims at studying not only the American references about the accounting procedure of investment stocks but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ones of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so greatly concerns the problems of the study and their improvements that it is aim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andard formation and the suggestion of statement as well as to introduce to general accountants in charging a guid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accounting procedure.

### 1. 序 論

企業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尙古이 1984年 5月 17日에 개정되었고, 이에 맞추어 企業會計基準도 1984年 9月 1日에 개정 시행하게 되었고 그 후 1985年 12月에 보완되었다. 企業會計基準이 개정되면서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規定이 별도로 분리되었다. 證券管理委員會는 1984年 12月에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聯結財務諸表基準을 제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企業會計基準과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규정이 얼마만큼 會計情報利用者들의 情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들 규정을 적용시 未備點이 나타나고 있어 각 기업들이 同質의인 會計情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點은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이 대체적으로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영향을 받아 公定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經濟現實은 간단한 實證的檢證 내지는 충분한 研究檢討가 부족했는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企業相互間 投資의 活潑에 따라 投資有價證券과 有價證券, 關係社有價證券(특히 關係社株式)의 評價의 그에 따른 會計處理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企業會計基準과 聯結財務諸表에 많은 工夫가 한데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投資株式에 대한 會計處理의 규정은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디 하겠다.

本 論稿에서는 投資株式의 會計處理에 관해서 美國의 文獻과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 및 聯結財務諸表 등에 대해서 研究하고 問題點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므로써 基準樹立 또는 意見書 세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一般會計擔當者에게 會計處理上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參考指針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 II. 投資株式의 評價

### 1. 美國의 評價基準

美國에서 投資株式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은 企業會計基準과 차이가 있다. 投資株式에 대한 회계처리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다르디.

#### 1) 持分比率

- (1) 20% 미만
- (2) 20% 이상 50% 이하
- (3) 50% 초과

#### 2) 議決權의 有無

- (1) 議決權이 있는 株式
- (2) 議決權이 없는 株式

#### 3) 市場性의 有無

- (1) 市場性이 있는 株式
- (2) 市場性이 없는 株式

첫째, 持分比率이 20% 미만이거나 議決이 없는 株式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原價法 또는 低價決 중에서 한 방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① 市場性이 있는 株式의 경우에는 低價法(the lower of cost or market method)을 적용하고 ② 市場性이 없는 株式의 경우에는 原價法(the cost method)을 적용한다.

둘째, 議決權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서 支配權은 없나 하더라도 被投資會社의 經營과 財務政策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持分法(the equity method)에 의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 被投資會社의 理事會에 참석하여 議決權을 행사하거나, 政策決定過程에 참여하거나, 두 會社가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거나, 경영중을 상호 교환하고 있거나, 피투자회사가 技術面에서 투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여러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APB opinion NO. 18에서는 반대의 증거가 있는 한, 被投資會社의 議決權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sup>(1)</sup> FASB에서는 持分比率이 20% 이상이지만 중대한 영향

(1) AICPA,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 Opinions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18 (NEW YORK: 1971), par.17.

덕을 행할 수 없는 경우의 예(위에서 말한 반대의 증거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被投資會社가 소송이나 異議申請 등을 통하여 投資會社가 그 株式을 취득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2)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에 대한 영향력 행사란 모기한다고 정함이 約定된 경우, (3) 被投資會社의 多數株式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4) 被投資會社가 公表한 재무정보 이외의 정보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얻으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5) 투자회사가 被投資會社의 理事會에 권기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sup>(2)</sup> 따라서 投資會社의 持分比率이 20% 이상 50% 이하일 때는 投資會社의 投資株式計定은 持分法으로 평가한다.

제책,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議決權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는 투자회사는 그 個別財務諸表에는 그 投資株式을 持分法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별재무제표의는 별도로 每期에 聯結財務諸表을 작성하여야 한다(물론 聯結財務諸表을 작성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持分比率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투자회사)의 종속회사(피투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會計實體가 되므로 지배회사의 投資株式計定에는 그 持分比率만큼 종속회사의 純資産價値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聯結貸借對照表에는 지배회사의 投資株式計定과 종속회사의 株主持分(資本金과 剩餘金)이相加되어 投資株式計定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종속회사의 資産과 負債 및 少數株主持分(minority interest)이 표시된다. 즉, 지배회사의 투자주식계정 내선에 그 持分比率만큼 종속회사의 純資産(종속회사의 資産-종속회사의 負債-종속회사의 少數株主持分=종속회사의 純資産 중 지배회사의 持分)이 표시되는 것이다. 또 聯結損益計算書에는 지배회사의 持分比率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의 純利益이 지배회사의 純利益에 가산 표시된다. 이 점에서 설명한 美國의 일반적으로 인경된 會計原則을 요약하면 <表1>과 같다.

<表 1. 投資株式에 대한 會計(美國)>

| 投資의 性格  | 持分比率             | 評價方法  |
|---|------------------|---|
| 1.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br>(1) 議決權 없는 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br>(2) 議決權 있는 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모든 경우에<br>20% 미만 | 市場性이 없는 株式의 경우에는 原價法,<br>市場性이 있는 株式의 경우는 低分法      |
| 2.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支配權이 없는 경우  | 20% 이상<br>50% 이하 | 持分法   |
| 3. 支配權이 있는 경우<br>(1) 聯結에서 제외되는 경우<br>(2) 聯結可能한 경우                                 | 50% 초과<br>50% 초과 | 持分法<br>개별 재무제표에서는 持分法으로 평가하고 聯結財務諸表에서는 資本計定과 相計합. |

또 <圖 1>은 美國에서 일반적으로 인경되고 있는 株式의 期末評價方法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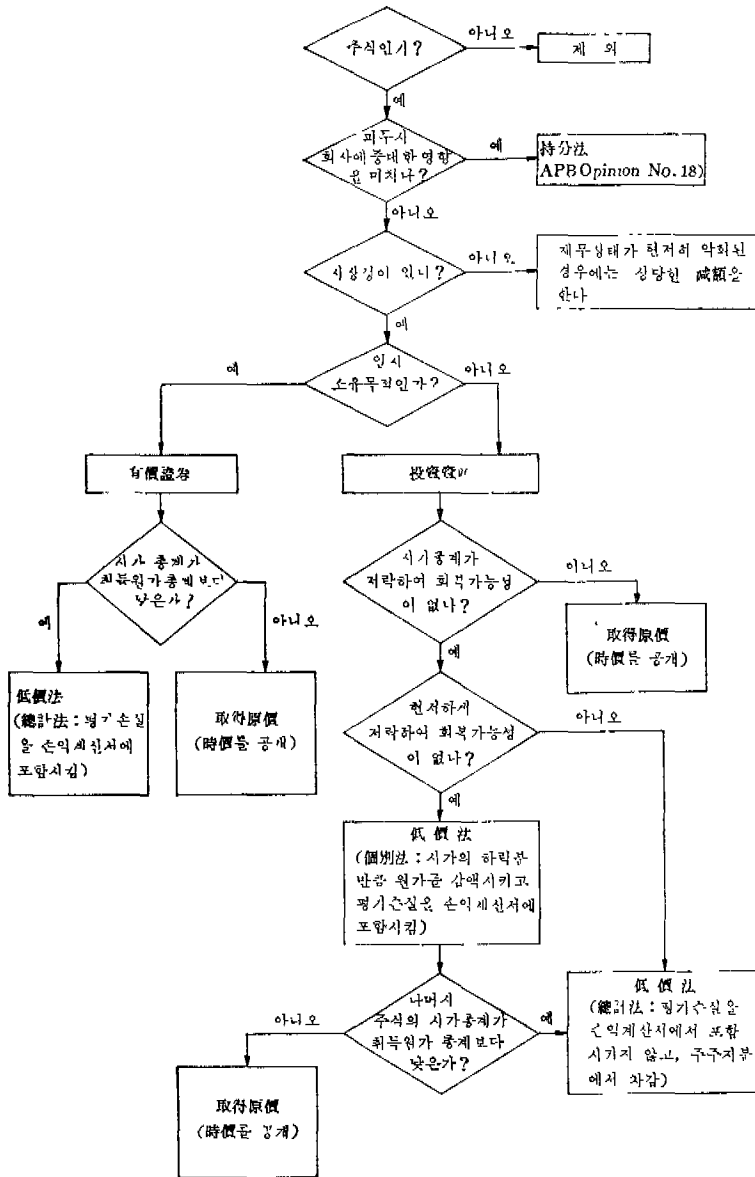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評價基準

중국에는 投資資産 中 上場株式의 評價方法은 有價證券의 評價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企業會計基準 제94조(投資資産의 評價)가 개정됨에 따라 投資株式의 評價方法과 有價證券의 評價方法 사이에 차이가 생겼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① 실질적으로 經營權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投資株式과 關係會社株式은 有價證券의 평가기준과 유사하게 低價法과 條件附低價法 중에서 기업이 한 방법을 택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고,<sup>(3)</sup> 실질적으로 經營權을 지배하고 있는 投資株式과 關係會社株式은 原價法과 低價法 중에서 한 방법을 대하여

(2) FASB, "Criteria for Applying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 Interpretations of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NO.35(Stamford, Conn: 1981)

(3) 企業會計基準 第94條 第①項, 第②項



〈圖 1〉 株式의 期末評價方法(미국 의 경우 : FASB Statement NO. 12)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4)

(2) 上場株式과 非上場株式에 대한 평가 방법은 자신장 거의 승인하게 규정하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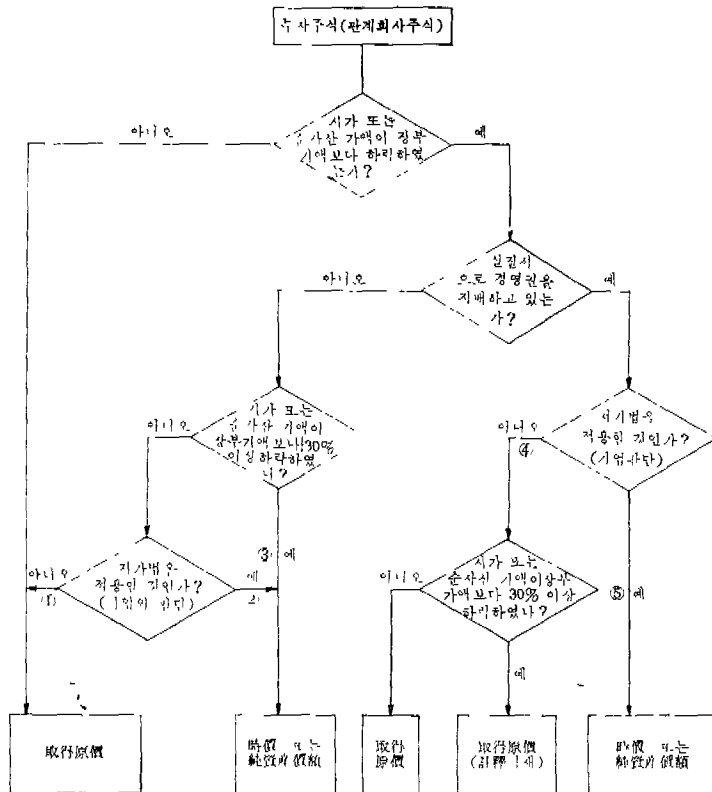
한편 聯結財務諸表基準에서는 支配會社가 連結제무제표로 식경안 경우에 聯結에서 제외된 從屬會社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會社에 대한 投資計定の 평가는 持分法에 의하여 계산한 기액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4) 企業會計基準 第94條 第①項, 第③項

(5) 企業會計基準 第94條 第①項~第③項

〈表 2〉 投資株式에 대한 會計(企業會計基準)

| 投資의 株 格   | 持分比率             | 評價方法                             |                         |
|---|------------------|----------------------------------|-------------------------|
|   |                  | 個別財務諸表                           | 聯結財務諸表                  |
| A. 실질적으로 經營權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경우<br>1. 일반투자주식<br>2. 관계회사주식                               | 20%미만<br>20%이상   | 低價法 또는 條件附低價法<br>위와 같음           | 持分法                     |
| B. 실질적으로 經營權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br>1. 일반투자주식   | 20%미만            | 原價法(30% 이상 하락한 경우는<br>추적) 또는 低價法 |                         |
| 2. 관계회사주식<br>(1)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경우<br>(2) 지배·종속관계인 경우<br>① 연결에서 제외되는 경우<br>② 연결 가능한 경우 | 20%~50%<br>50%초과 | 위와 같음<br>위와 같음<br>위와 같음          | 持分法<br>持分法<br>資本計定과 相計한 |



① 條件附低價法 ② 低價法 ③ 條件附低價法 또는 低價法 ④ 原價法 ⑤ 低價法

〈圖 2〉 投資株式(關係會社株式)의 期末評價方法(企業會計基準)

〈表 2〉의 〈圖 2〉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Ⅲ. 投資株式 評價方法

#### 1. 原價法에 의한 投資株式評價

被投資會社의 株式에 대한 投資計定을 原價로 유지하고 投資 이후에 발생된 被投資會社의 損益에 따른 투자가치의 변동을 投資計定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投資會社와 被投資會社는 法的으로 독립된 實體로 被投資會社가 移付한 이익은 피투자회사의 것이지 投資會社의 것이 아니며 被投資會社가 配當宜남을 할 때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利益만이 投資會社의 利益이 된다는 論理이다. 따라서 단순한 被投資會社의 純利益, 純損失 報告에 대하여는 投資會社에서는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取得日 이후에 발생한 累積利益 중에서 매당된 금액만이 投資會社의 利益으로 인식된다.

投資計定の 原價를 減少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그 株式을 처분한 경우 이외에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한정된다.<sup>(6)</sup>

①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의 株式을 취득한 이후에 피투자회사에 발생한 利益에 대한 투자회사의 몫(持分)을 초과하여 配當을 받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配當收益으로 보지 않고 投資株式計定の 帳簿價額(原價)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投資株式을 취득할 때 그 取得原價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피투자회사의 資産으로부터 清算配當(liquidating dividend)을 받아 投資株式의 取得原價中 일부를 회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② 피투자회사의 營業成績 등의 악화로 인하여 投資資産의 價値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그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投資計定の 帳簿價額을 純資産價値의 下落分만큼 감소시키고 그것을 實現된 損失로 처리한다. 이렇게 감소시킨 原價는 이후 市場價値가 회복되는 경우에도 변동시켜서는 인된다.<sup>(7)</sup> 原價法의 적용내적이 되는 株式에 대하여는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에서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기준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投資株式에 대하여는 전부 原價法(혹은 低價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原價主義를 진행하고 있는 企業會計基準上 예외적으로 株式配當에 의한 投資計定の 增額을 허용하였다.<sup>(8)</sup>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株式의 평가도 原價主義의 예외라 하겠다. 原價法은 처리방법의 간편함과 原價主義를 따르는 傳統的 會計의 지지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投資計定이 취득 후의 被投資會社의 營業損益으로부터 발생하는 投資價値의 增減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즉 投資計定이 경제적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投資會社는 被投資會社의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株式取得 직후에 投資會社의 持分을 초과하여 配當을 받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投資計定에서 차감함으로써 취득시 原價를 일단 質價로 수정한 것을 그 후의 原價로 함으로써 論理性을 缺如하였다는 것이다.

#### 2. 低價法에 의한 投資株式評價

投資株式을 低價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企業會計基準과 美國의 일부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이 서로 다르다.

##### (가) 企業會計基準의 規定

첫째,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投資株式과 關係會社株式의 경우에 有價證券의 평가방법과 유사하게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이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때는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100분의 30 미만 하락한 때는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低價法), 原價로 평가할 수도 있다(條件附低價法).

(6) 趙星河, 中級會計, 貿易經營社, 1986, p.440.

(7) FASB, "Accounting for Certain Marketable Securiti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2, 1975, par. 21.

(8) 企業會計基準 第78條 第①項

둘째, 실질적으로 經營權을 지배하고 있는 投資株式과 關係會社株式의 경우에는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의 하락 정도에 관계없이 항상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低價法), 原價로 평가할 수도 있다(原價法). 다만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低價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時價 또는 純資産價額의 내역을 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時價는 決算期前 1月の 終價平均에 의하여 산정하고, 純資産價額은 당해 株式發行會社의 貸借對照表上 純資産價額에 의하여 산정한다.

네째, 低價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評價損失에 대한 회계처리는 有價證券에 대한 회계처리룰 준용한다.

(나) FASAB Statement NO. 12의 規定

美國에서 市場性이 있는 投資株式(持分比率 20% 미만)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은 低價法이지만, 이 低價法은 流動資産에 적용한 방법과 다르며, 또 企業會計基準上的 적용방법과도 다르다. FASB Statement NO. 12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流動資産에 속하는 持分有價證券과 달리하여 投資資産에 속하고 市場性이 있는 持分有價證券의 原價總計과 時價總計을 비교한다.

둘째, 時價總計가 原價總計보다 낮은 때에는 그 差額을 評價充當金으로 설정하여 投資株式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評價損失(未實現損失, unrealized loss)을 損益計算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貸借對照表의 株主持分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sup>(9)</sup>

셋째, 후에 時價가 회복되면 原價를 한도로 하여(評價充當金殘額이 0이 될 때까지) 評價充當金を 還入시킨다. 이 未實現利得(unrealized gain)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評價充當金을 借記하고, 株主持分에서 差減表示했던 이권의 未實現損失을 貸記한다.

네째, 原價總計와 時價總計을 비교할 때의 原價는 원초의 取得原價를 의미하지만, 이 取得原價 자체를 감여시켜 새로운 原價로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즉, ① 短期投資로서의 株式을 長期投資資産으로 再分類하거나 그 反對의 경우에 원초의 取得原價 이하로 時價가 하락하였다면, 取得原價를 감소시켜 그 時價를 새로운 原價로 한다. ② 投資株式의 時價가 하락하였는데 그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恒久的인 것이 라면, 株式의 種目別로 取得原價를 時價의 하락분만큼 減額하여 이 減額된 原價(時價)를 새로운 原價(帳簿價額)로 한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時價의 하락분을 實現損失로 보아 損益計算書에 포함시키며, 후에 時價가 회복되더라도 減額된 原價를 評價增하지 않는다.

〈表 3〉 企業會計基準의 低價基準과 美國의 低價法の 比較

| 區 分                    | 美 國 的 低 價 法        | 우 리 나 라 低 價 基 準                             |
|------------------------|--------------------|---|
| 對 象                    | 市場性 있는 持分性 有價證券    | 持分有價證券과 債務有價證券에 모두 적용됨                      |
| 適 用 與 否                | 義務的<br>總計基準法만 가능   | 適擇의이나 繼續性 준수<br>種目別基準法과 總計基準法 중에서<br>인의로 선택 |
| 時價의 概念                 | 決算期末日의 時價          | 決算期前 1月の 終價平均                               |
| 評價充當金                  | 投資有價證券에서 差減表示      | 投資有價證券에서 差減表示                               |
| 評價損失                   | 未實現損失로 資本計定에서 別途表示 | 營業外費用                                       |
| 評價充當金還入                | 未實現損失의 還入          | 營業外收益                                       |
| 實現損益의 計算               | 販賣價格과 最初原價의 差異     | 販賣價格과 帳簿價額과의 差異                             |
| 個別株式에 대한 顯著的한 投資價値의 低落 | 投資原價修正 및 當期損失로 認識  | 投資原價修正 및 當期損失로 認識                           |

(9) 企業會計基準에서는 損益計算書에 포함하고 있다.

〈表 3〉은 企業會計基準의 低價基準과 美國의 低價法을 요약한 것이다.

### 3. 持分法에 의한 投資株式評價

(가) 持分法の 意義

持分法(equity method)은 實價法(actual value method), 經濟的 基礎法(economic basis method) 또는 發生會計法(accrual method)이라고도 하는데, 投資株式을 취득할 때는 原價로 기록되며 취득 이후에 被投資會社의 未處分利益剩餘金の 增減額에 대한 投資會社의 持分額을 投資株式計定에 가감하는 방법이다.<sup>(10)</sup>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의 經營政策과 財務政策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配當金만으로 投資收益을 측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나, 예나하던 투자회사가 現金(資金)의 필요성이나 稅金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配當을 조절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B opinion NO. 18에서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議決權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서 支配力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株式을 持分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란 반대의 근거가 없는 한 피투자회사의 議決權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라고 규정하였다.

持分法이란 聯結會計上 投資有價證券計定에 대한 會計處理方法의 一種이다. 그러나 取得原價主義를 기본으로 하는 個別會計에서는 原則적으로 取得原價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改正聯結財務諸表基準 제15조 제2항은 持分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持分法에 의한 計算에 있어서는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의 純資産 및 損益중 投資會社에 귀속하는 부분의 變動에 따라 그 投資計定을 每期 修正한다.」

一般적으로 이런 會社가 他會社의 株式을 取得한다란은 결국 그 會社의 純資産의 運用에 持分比率에 따라 支配하는 權利를 取得하는 것이 된다. 이는 다음의 2가지 의미를 갖는다.

(1) 投資會社가 保有하는 株式의 價値는 被投資會社의 純資産의 價値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純資産價値가 變動하면 그에 따라 投資株式의 價値도 변동해야 한다.

(2) 投資會社는 그의 持分比率에 따라 被投資會社의 事業活動 내지는 그 成果로서의 純資産變動에 責任을 진다. 따라서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의 事業活動에 관여하는 程度가 크면 클수록 당해 被投資會社는 投資會社의 組織內에 있는 1個 事業部門으로서의 性格을 갖게 된다. 이러한 相互關係下에서 投資會社는 發生主義原則에 따라 당해 被投資會社의 事業成果를 自己財務諸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는 다음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

總額法：投資會社의 貸借對照表上 被投資會社 株式計定을 그 會社의 總資産과 總負債를 모두 對映시키는 방법

純額法：投資會社의 貸借對照表上 被投資會社 株式을 그 會社의 純資産만을 對映하는 방법

즉 위의 總額法이 聯結方法이고 아래의 純額法이 여기서 말하는 持分法인 것이다. 따라서 연결방법도 持分法과 같이 투자회사의 被投資會社에 대한 持分을 투자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는 방법인 것이며 이러한 思想의 本質은 두 방법이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기 다른 점은 被投資會社의 持分을 聯結方法에서는 總額法으로 聯結한다는 것이고 利益이나 剩餘金은 어느 方法에 의하더라도 同額으로 되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의미에서 聯結法을 完全聯結(full consolidation)이라 부르고 持分法을 一行聯結(one line consolidation)이라 부른다.<sup>(12)</sup> 따라서 持分法도 被投資會社의 業績成果를 投資會社財務諸表에 反映하는 會計處理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一般적인 投資計定の 評價方法으로 採擇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聯結會計 이외에는 個別財務諸表에서는 認定되지 아니한다.

(10) 趙星河, 上揭書, pp. 447~448.

(11) APB Opinion NO. 18, "The Equity Method of Investments in Common Stock," par. 19C, 19d.

(12) 鄭鍾岩, 高級會計, 博英社, 1985. p. 56.



(나) 持分法適用의 範圍(우리나라의 경우)

持分法の 適用對象은 原則的으로 非聯結從屬會社와 關係會社(20% 이상의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에 대한 投資計定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聯結基準 제15조 제1항은 「聯結에서 除外된 從屬會社와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所有하고 있는 會社에 대한 投資計定の 評價는 持分法에 의하여 計算한 價額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持分法の 對象으로 되는 非聯結從屬會社 및 關係會社라고 하는 概念에 대하여 명확히 한 필요가 있다. 먼저 聯結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 즉 持分法適用對象이 되는 非聯結從屬會社에 대하여 본다.

聯結基準 제4조는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를 限定的으로 규정하여 「從屬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從屬會社는 聯結財務諸表 作成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 各號들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開始의 決定이 있는 경우
2. 清算중이거나 破産宣告가 있는 경우
3. 戰爭·大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가 發生된 경우
4. 製造業·建設業 등과 金融業·保險業·證券業·非營利法人의 경우의 간에 從屬會社의 營業의 種類·內容이 支配會社의 營業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로서 財務報告의 統一性을 期할 수 없는 業種의 경우
5. 直前年度末의 資本金이 5億원 미만인 경우

비대칭 위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從屬會社는 聯結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 聯結上으로는 除外하더라도 持分法の 適用對象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持分法の 적용 내지는 위의 각호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第4號의 異種業種으로 聯結하더라도 財務報告의 統一性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만이 持分法適用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同條 제6항에서 「持分法을 適用할 會社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持分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1,2,3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聯結은 물론이고 持分法適用에도 완전히 除外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4호는 持分法으로 聯結이 되는 從屬會社이고 그 他 제1,2,3호와 제5호는 完全非聯結從屬會社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持分法對象이 되는 關係會社에 대하여 본다. 關係會社 중 持分法對象이 되는 會社는 形式基準으로만 규정하여 「發行株式總數의 20% 이상 50% 이하를 所有하고 있는 會社」로 하고 있다. 따라서 關係會社이면 가리지 본 제1,2,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理由로 持分法適用에서 除外되는 範圍인 것이리라 하겠다.

(다) 持分法の 適用節次

持分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節次가 準用되며,<sup>(13)</sup>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① 投資會社는 被投資會社에 대한 投資를 회계에는 取得原價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 被投資會社에 利益이 발생하면 그 利益 중 투자회사의 持분에 상당하는 금액(持分比率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投資計定에 借記하고 投資利益計定에 貸記한다. 투자회사에 損失이 발생하면 그 損失 중 투자회사의 持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投資損失計定에 借記하고 投資計定에 貸記한다.

② 만약 투자회사의 損益計算書에 特別項目(異常項目)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한 투자회사의 持분은 ①에서 설명한 정상적인 投資利益 또는 投資損失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特別項目으로 보고한다(이 기준은 美國에 기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特別項目으로 분리하여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다).

③ 투자회사에 대한 持분의 50% 이상은 인식하여 投資計定이나 當期損益에 반영한 경우에는 持分法適用會社間의 去來에 의한 資産에 포함된 未實現利益은 제거한다.

④ 투자회사로부터 配當金을 받은 경우에는 投資計定에서 당해 配當金額을 감액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13) 聯結財務諸表 第15條 ③항

이유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配當金은 投資計定의 일부가 現金으로 진원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⑤ 投資資産의 取得原價가 취득 당시 피투자회사의 帳簿上 純資産價額에 대한 투자회사의 持分相當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投資利益의 기록에 조경이 필요하다.

위에서 본 持分法을 적용하는 경우의 節次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4)</sup>

1) 持分法을 적용하는 경우의 投資會社의 當期純利益, 剩餘金 및 資本을 聯結한 경우의 純利益, 剩餘金 및 資本과 同一해야 한다.

2) 따라서 投資差額의 計上이나 未實現損益의 除去도 聯結의 경우와 같아야 한다.

投資差額이란 投資會社의 投資株式原價와 그 株式取得日 현재의 持分法適用會社 純資産에서 가하는 投資會社 持分相當額과의 差額을 뜻한다. 따라서 投資差額의 經濟的 實體는 聯結에서의 聯結調整計定과 同一 同一하다.

따라서 이 差額은 投資原價가 持分相當額을 초과할 때는 借邊差額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미달할 때는 貸邊差額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借邊差額은 聯結調整借計定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償却을 통하여 費用化되고 貸邊差額은 遞入을 통하여 利益으로 計上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러한 投資差額을 算出하는 方法도 聯結會計와 같이 段階法 또는一括法의 計算方法이 適用된다.

그러나 이 差額의 處理에 있어서 持分法은 一行聯結이기 때문에 投資計定에서 他計定으로 對替되는 처리는 불가능하다. 즉 完全聯結에서와 같이 投資除去差額을 計算하여 聯結調整計定으로 對替하는 등의 처리는 할 수 없고 投資差額은 投資計定에 그대로 두고 償却하는 수 밖에 없다. 만일 그것의 原因이 土地의 過少 評價에 있다고 하더라도 償却時까지 投資計定에 그대로 포함시켜 둘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取得時點에서의 投資差額은 取得日 이후의 償却이나 遞入을 통하여 投資計定이 加減評價되므로서 결국 投資計定의 金額은 持分法適用會社의 帳簿上 純資産價額, 즉 資本은 投資會社의 持分相當額과 一致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여 完全聯結에서의 相計除去差額에 해당하는 것이 償却되었으므로 投資計定과 資本計定이 相計되어야 할 金額相當額은 同一한 金額으로 되는 結果가 된다.

이것저 持分法에 의한 會計處理에 대해서 간단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6年 1月 1日, 울산會社는 언양會社의 發行株式(普通株) 1,000,000株 중 250,000株를 ₩8,5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울산會社는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해야 하는 法人이다. 同株式의 取得時 언양會社의 純資産價額(帳簿價額)은 ₩30,000,000이었다. 결국 울산會社는 언양會社의 帳簿價額을 초과하여 ₩1,000,000[₩8,500,000-0.25(₩30,000,000)]을 추가 지급한 셈이다.

김도경과 초과 지급된 ₩1,000,000 중 ₩600,000은 언양會社의 減價性資産이 과소평가되었고, 나머지 ₩400,000은 營業權을 기록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울산會社는 과소평가된 기금의 평균잔존내용년수가 10년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營業權은 5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했다. 1986年 6월 언양會社는 ₩2,800,000의 純利益을 기록하였으며, 6月 30日과 12月 31日에 각각 ₩600,000과 ₩800,000의 配當을 지급하였다.

(解 答)

울산會社는 聯結財務諸表作成法人이고 언양會社의 持分率이  $\frac{20}{100} \sim \frac{50}{100}$ 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持分法을 적용한다.

㉑ 普通株의 取得(1986年 1月 1日)

(借) 關係會社株式 8,500,000

(貸) 現金 8,500,000

㉒ 配當의 記錄(1986年 6月 30日)

(14) 崔杓星, "持分法會計에 관한 小考", 會計와 稅務, 1985년 11월, p.114.

- |                                   |                    |
|-----------------------------------|--------------------|
| (借) 現金 150,000                    | (貸) 關係會社株式 150,000 |
| ㉓ 純利益의 發生(1986年 12月 31日)          |                    |
| (借) 關係會社株式 700,000                | (貸) 投資利益 700,000   |
| ㉔ 配當의 記錄(1986年 12月 31日)           |                    |
| (借) 現金 200,000                    | (貸) 關係會社株式 200,000 |
| ㉕ 帳簿價額의 超過額에 대한 償却(1986年 12月 31日) |                    |
| (借) 投資利益 140,000*                 | (貸) 關係會社株式 140,000 |

\*과소평가된 資産의 경우 :  $W600,000 \div 10 = W60,000$   
 기록되지 않은 營業權의 상각 :  $W400,000 \div 5 = 80,000$   
W140,000

(라) 持分法의 會計變更

피투자회사에 대한 持分比率은 투자회사가 그 保有株式을 치분하거나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또는 피투자회사가 그 말령주식을 취득하거나 新株를 발행함으로써 때때로 변동한다. 持分比率이 변함에 따라 투자회사는 投資計定의 평가방법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 변경은 대부분 持分法으로부터 다른 방법(原價法, 低價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다른 방법으로부터 持分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① 다른 方法으로부터 持分法으로의 變更

美國에서는 持分比率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의 행시에 대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投資計定을 항상 持分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方法으로부터 持分法으로의 變更이 필요한 경우는 投資株式의 持分比率이 증가하는 경우(즉, 20% 미만으로부터 20% 이상으로 增加하는 경우)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持分法이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경우에 非聯結從屬會社와 持分比率이 20% 이상 50% 이하인 關係會社에 대한 投資計定의 평가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持分法으로의 變更이 필요한 경우는 持分比率이 증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持分比率이 減少하는 경우(즉, 聯結된 從屬會社의 持分比率이 減少하여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 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점이 美國과 다르다.

이와 같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持分比率이 增加 또는 減少하여 다른 方法으로부터 持分法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마치 최초의 投資한 원 당시부터 持分法을 계속해서 적용해 온 것처럼 投資計定의 帳簿價額을 소급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變更前의 方法에 의한 評價額과 持分法에 의한 평가액의 差額만큼 변경하는 會計年度 期初의 利益剩餘金額을 소급 수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때때로 인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초의 투자한 원 당시 피투자회사의 市場價値를 계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持分法으로의 變更으로 인한 수정 방법은 실질적으로 會計變更의 하나인 報告實體의 變更(changes in the reporting entity)에 해당되며, 前期損益修正과 같은 소급 수정방법의 一種이다.

② 持分法으로부터 다른 方法으로의 變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持分比率이 감소하여 持分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까지 적용하던 持分法으로부터 原價法이나 低價法 등으로 投資計定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투기회기는 변경일 현재의 投資計定의 帳簿價額(지금까지 持分法을 적용해 온 것과 남은 금액)은 새로운 방법이 적용된 原價로 보아야 하며, 帳簿價額이나 利益剩餘金額을 소급 수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변경 이후에는 持分法에 따른 여러 걸자란 모두 중지하여야 하므로 변경 이전에 持分法으로 평가할 때 남아 있던 종속회사 帳簿上 純資産價額은 초과하는 投資原價(投資株式의 取得原價)가 있더라도 이를 償却할 필요가 없다. 나쁜 예외적으로 持分法에서 原價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에 투자회사가 수취한 配當金 累計額이 피투자회사의 剩餘金 增加額에 대한 투자회사의 持分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清算配當으로 보아서 投資計定의 帳簿價額에서 감액한다.

여기서 간단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6年 1月 2日, 大田會社는 京南會社의 普通株式 중 10%에 해당하는 株式은 ₩500,000의 現金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매입시의 京南會社 純資産의 帳簿價額은 ₩3,000,000이었다. 取得原價가 京南會社 純資産에 대한 持分額(₩3,000,000×10%)을 초과하는 금액은 殘存耐用年數가 10년인 減價性資産의 過少評價 때문인 것으로 判定되었다. 大田會社는 每年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이다.

1988年 1月 2日, 大田會社는 京南會社株式의 20%를 추가로 ₩1,200,000에 구입하였는데, 당시의 京南會社 純資産의 帳簿價額은 ₩6,000,000이었다.

1986~1988年 중 京南會社의 純利益 및 支給한 配當金은 다음과 같다. 配當金은 每年度末에 支給받았다.

| 年度   | 京南會社의 純利益 | 大田會社가 受取한 配當金 |
|------|-----------|---------------|
| 1986 | ₩ 500,000 | ₩ 20,000      |
| 1987 | 1,000,000 | 30,000        |
| 1988 | 1,200,000 | 120,000       |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15) 각 거래를 다음과 같이 會計處理할 수 있다.

- ㉑ 普通株 10% 取得(1986年 1月 2日)
    - (借) 投資有價證券 500,000 (貸) 現金 500,000
  - ㉒ 配當金の 受取(1986年 12月 31日)
    - (借) 現金 20,000 (貸) 受人配當金 20,000
  - ㉓ 配當金の 受取(1987年 12月 31日)
    - (借) 現金 30,000 (貸) 受人配當金 30,000
  - ㉔ 普通株의 追加取得(1988年 1月 2日)
    - (借) 關係會社株式 1,700,000 (貸) { 現金 1,200,000  
投資有價證券 500,000
  - ㉕ 投資利益의 發生(1988年 12月 31日)
    - (借) 關係會社株式 335,000 (貸) 投資利益 335,000\*
- \*純利益의 發生: ₩1,200,000×30%=₩360,000  
 減價性資産償却(₩500,000-₩300,000)÷8年=(₩25,000)  
₩335,000
- ㉖ 配當金の 受取(1988年 12月 31日)
    - (借) 現金 120,000 (貸) 關係會社株式 120,000

美國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原價法에서 持分法으로 變更한 경우에는 投資한 株式이 보유된 기간에 걸쳐서 持分法이 적용되어 온 것처럼 投資資産의 帳簿價値를 소급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소급조정하여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 ㉑ 普通株 10% 取得(1986年 1月 2日)
  - (借) 投資資産 500,000 (貸) 現金 500,000
- ㉒ 配當金の 受取(1986年 12月 31日)
  - (借) 現金 20,000 (貸) 受人配當金 20,000
- ㉓ 配當金の 受取(1987年 12月 31日)
  - (借) 現金 30,000 (貸) 受人配當金 30,000
- ㉔ 普通株의 追加取得(1988年 1月 2日)

(15) 企業會計基準 第110條와 第111條의 규정에 따르면, 原價法에서 持分法으로의 변경에 의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取得原價와 純資産의 帳簿價額과의 差額에 대한 償却은 持分法으로 변경한 때부터 償却하여, 그외의 다른 회계처리에 소급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借) 投資資産 1,260,000

(貸) { 現金 1,200,000  
      利益剩餘金 60,000\*

\*京南會社の 이익에 대한 大田會社の 持分(10%)

초과지금액(취득시)에 대한 상각액

수취된 配當金

前期損益修正

|  | 1986            | 1987            | 合計              |
|--|-----------------|-----------------|-----------------|
|  | ₩50,000         | ₩100,000        | ₩150,000        |
|  | (20,000)        | (20,000)        | (40,000)        |
|  | <u>(20,000)</u> | <u>(30,000)</u> | <u>(50,000)</u> |
|  | <u>₩10,000</u>  | <u>₩50,000</u>  | <u>₩60,000</u>  |

㉔ 投資利益의 發生(1988年 12月 31日)

(借) 投資資産 340,000

(貸) 投資利益 340,000\*

\*純利益의 發生

₩1,200,000×30%=₩360,000

減價性資産償却

(₩500,000 - ₩300,000) ÷ 10年 = ₩20,000

₩340,000

㉕ 配當金の 受取(1988年 12月 31日)

(借) 現金 120,000

(貸) 投資資産 120,000

㉖ 配當金の 受取(1988年 12月 31日)

(借) 現金 120,000

(貸) 關係會社株式 120,000

(다) 持分法에서의 未實現損益의 除去

持分法適用의 경우도 原則적으로 聯結의 方法을 準用하므로 聯結에서의 未實現損益의 除去方法과 같은 方法을 採하여야 한다. 따라서 持分法適用에 있어도 聯結會社와 持分法適用會社間에 去來에 의한 資産에 포함된 未實現損益은 除去하여야 한다. 이때 被投資會社(持分法適用會社)에 存在하는 外部株主持分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未實現損益을 全額除去한 것인가 아니면 持分比率에 相當하는 부분만을 除去할 것인가의 問題가 생긴다. 또한 持分法은 一行聯結(one-line consolidation)이기 때문에 被投資會社의 資産·負債 및 諸去來殘額은 投資會社 財務諸表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未實現損益除去의 分介를 投資株式과 持分法損益科目으로 處理하는 등의 問題가 聯結과 다르게 된다. 여기서 去來의 흐름에 따라 投資會社에서 被投資會社로의 down-stream의 경우와 반대로 被投資會社에서 投資株式로의 up-stream의 경우로 區分하여 설명한다.

㉑ 持分法適用會社가 買入한 資産의 未實現損益(down-stream)

聯結會社(投資會社를 포함)가 販賣한 것을 持分法適用會社가 買入한 資産 중 期末在庫로 保有하는 部分에 포함된 未實現損益은 投資會社의 持分比率에 按比例로 全額을 除去한다.

㉒ 持分法適用會社가 販賣한 資産의 未實現損益(up-stream)

持分法適用會社가 販賣한 것은 聯結會社(投資會社를 포함)가 買入한 資産 중 期末在庫로 保有하는 部分에 포함된 未實現損益은 投資會社의 持分比率相當額만을 除去한다. 또한 持分法適用會社間에 去來로 發生한 資産의 未實現損益도 위 up-stream의 경우와 같이 處理한다.

예를 들어 K社는 L社株式의 30%를 所有하여 K社는 持分法適用對象會社이다. 當期에 L社는 K社에 ₩1,000의 利益을 加算하여 商品을 賣出하였고, K社는 이를 모두 期末在庫로 保有하고 있다. L社의 當期純利益은 ₩10,000이다.

㉑ L社 當期純利益에 대한 持分計上의 分介

(借) L社株式 3,000(B/S)

(貸) 持分法投資損益 3,000(P/L)

㉒ 未實現利益의 除去分介

(借) 持分法投資損益 300(P/L)

(貸) L社株式 300(B/S)

위 ㉑의 ㉒를 합하여 分介하면

(借) L社株式 2,700

(貸) 持分法投資損益 2,700

計算; L社 純利益

10,000×30% = 3,000

$$\begin{aligned} \text{賣出額의 未實現利益} & \quad 1,000 \times 30\% = (300) \\ & \quad \underline{2,700} \end{aligned}$$

(나) 持分法適用의 中止의 再開

피투자회사에 損失이 발생하면 投資計定을 감소시키므로, 피투자회사에 계속 損失이 발생하면 投資計定의 잔액은 零(0)이 된다. 投資計定의 잔액이 0이 된 이후에는 損失이 계속되더라도 더 이상 감액될 것이 없으므로 持分法 適用을 중지한다. 단약에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의 사이에 債權·債務가 있다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純債權額을 고려하여 投資計定과 純債權額의 合計가 零(0)이 될 경우에 持分法 適用을 중지한다. 持分法 適用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가 利益을 계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利益이 持分法 適用 中止期間中에 인식되지 않은 損失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 持分法 適用을 재개한다.

이에 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6)

| 年度 | 年 度 中 의 事 件   |          |       |         |
|----|---|----------|-------|---------|
| 0  | 투자회사(P社)가 피투자회사(S社)의 株式中 30%를 年度末에 ₩120,000을 지급하고 취득하다. |          |       |         |
| 1  | S社의 當期純利益   | ₩80,000  | P의 持分 | ₩24,000 |
| 2  | S社의 當期純利益   | ₩20,000  | P의 持分 | ₩6,000  |
| 3  | S社의 當期純損失   | ₩190,000 | P의 持分 | ₩57,000 |
| 4  | S社의 當期純損失   | ₩220,000 | P의 持分 | ₩66,000 |
| 5  | S社의 當期純損失   | ₩160,000 | P의 持分 | ₩48,000 |
| 6  | S社의 當期純損失   | ₩50,000  | P의 持分 | ₩15,000 |
| 7  | S社의 當期純利益   | ₩100,000 | P의 持分 | ₩30,000 |
| 8  | S社의 當期純利益   | ₩150,000 | P의 持分 | ₩45,000 |

이상의 자료에 대한 P社의 회계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年 度 | 投資計定(年初) | 投資利益(損失)<br>(年中) | 投資計定(年末) | *未記錄投資利益<br>(損失)(年中) | *未記錄投資損失<br>累計額 |
|-----|----------|------------------|----------|----------------------|-----------------|
| 1   | ₩120,000 | ₩24,000          | ₩144,000 | —                    | —               |
| 2   | 144,000  | 6,000            | 150,000  | —                    | —               |
| 3   | 150,000  | (57,000)         | 93,000   | —                    | —               |
| 4   | 93,000   | (66,000)         | 27,000   | —                    | —               |
| 5   | 27,000   | (27,000)         | 0        | (₩21,000)            | ₩21,000         |
| 6   | 0        | 0                | 0        | (15,000)             | 36,000          |
| 7   | 0        | 0                | 0        | 30,000               | 6,000           |
| 8   | 0        | 39,000           | 39,000   | 6,000                | 0               |

\*이 금액은 P社의 財務諸表에 표시되지 않는다.

(사) 持分法과 聯結과의 相違點

持分法은 聯結의 節次를 準用한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持分法の 적용 방법이 聯結節次와 같은 方法이어야 한다는 것은 持分法을 適用하므로써 從屬會社가 聯結의 범위에서 除外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聯結에 포함시킨 것이나 별 차이가 없도록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持分法은 어떤 從屬會社를 聯結에 포함시키는 것이 適用치 않은 경우 당해 從屬會社를 聯結에서 除外하더라도 그 결과는 同一하게 하기 위하여 利用되는 方法인 것이다.

聯結과 持分法과의 相違點은 財務諸表上 報告되는 項目의 明細程度에 差異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즉 투자회사의 期末純利益 및 투자계정의 期末株主持分은 投資計定을 持分法으로 處理하거나 從屬會社가

(16) 趙星河, 上揭書, p. 453.

聯結에 포함되거나 同額으로 되나 다음의 차이는 있다. 구체적으로 聯結과 持分法の 差異는 다음의 3가지로 된다.<sup>(17)</sup>

(1) 被投資會社가 損失을 計上한 경우

i) 聯結上으로는 당해 損失에 대한 投資會社 持分相當額을 聯結財務諸表에 반영하는데 반해

ii) 持分法에서는 당해 損失에 대한 投資會社 持分相當額만을 投資計定에서 減額하지만 投資計定이 零(0)이 되면 持分法の 適用을 停止하게 된다.

이와 같은 處理方法의 差異로 投資會社의 純利益 및 株主持分の 金額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2) 聯結에서는 資本聯結(投資와 株主持分과의 相計除去)이 행하여지지만 持分法에서는 이러한 것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聯結에서는 被投資會社의 資産·負債가 聯結財務諸表에 合算되는내 반면 持分法에서는 資産·負債의 合算計算이 없다.

#### 4. 市場價値法에 의한 株式評價

投資計定の 評價方法으로서 市場價値法은 現行價値會計의 立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短期投資資産인 有價證券이나 長期投資資産인 投資株式(關係會社株式을 포함한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市場性 있는 投資株式을 모두 貸借對照表日 현재의 現行市場價値로 評價하고 다만 市場性이 없는 것은 原價로 評價한다.

그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投資計定은 취득일에 取得原價로 기록한다.

② 취득 후에는 每期마다 종목별로 帳簿價額을 時價로 수정한다. 이 수정된 금액이 그 후의 帳簿價額이 된다.

③ 投資收益은 每期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 그 기간 동안 받은 配當額(現金配當, 現物配當 등)

㉡ ②에서 時價로 수정할 때 발생한 保有利得 또는 保有損失(holding gain or loss)

④ 投資資産의 처분시 帳簿價額과 販賣價格의 差異를 處分損益으로 인식한다. 市場價値法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一般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이 아니다. 이 방법은 理論的인 면에서 支持를 받고 있으며, 公認회사, 證권회사, 상호기금회사 등 특수한 산업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市場價値性의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① 證권의 시장가격은 언제나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번에 처분하려고 할 때는 그 시장가격이 현재보다 틀림없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歷史的 原價는 기업이 참여하는 교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檢證可能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금액은 경영자가 會計責任을 지고 있는 두자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시장교환에 의해 立證될 때까지는 유가증권의 利得과 損失이 보고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그러한 利得 또는 損失의 인식은 稅法에서도 容認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問題點이 있어도, 오늘날 美國에서 다수의 기업이 短期 또는 長期投資로서 有價證券에 대하여 그 市場價格을 註記 또는 註釋으로 공개하거나, 原價의 市場價格을 동시에 보고하기도 함으로써 情報利用者가 適當한 評價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場價値法에서 投資資産을 時價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利得이나 損失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第1法: 市場價値의 변동에 의한 利得 또는 損失은 그것이 實現되었거나 또는 未實現되었거나 관계없이 當기의 損益에 포함시킨다.

(17) 崔納星, “持分法會計에 관한 小考”, 會計와 稅務, 1985年 11月, p. 115.

(18) 趙星河, 上揭書, p. 459.

第2法：利得 또는 損失 중 實現된 것은 당기의 損益에 포함시키나 未實現된 것은 貸借對照表의 株主持分에 포함시킨다.

5. 綜合事例(企業會計基準과 聯結財務諸表基準에 의해서)

울산會社는 1983年 1月 1日 언양會社(非上場) 발행 주식의 80%를 ₩33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인 해 언양會社의 純資産은 ₩350,000이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다. 울산會社는 업종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언양會社를 연결에서 제외하고 있다. 취득인 이후 2年間 울산會社 株主持分の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資本金      | 資本剩餘金    | 利益剩餘金      | 合 計       |
|--------------|----------|----------|------------|-----------|
| 1983. 1. 1   | ₩200,000 | ₩50,000  | ₩100,000   | ₩350,000  |
| 純利益          | —        | —        | 90,000     | 90,000    |
| 剩餘金處分：       |          |          |            |           |
| 現金配當         | —        | —        | (60,000)   | (60,000)  |
| 株式配當         | 30,000   | —        | (30,000)   | —         |
| 任員賞與金        | —        | —        | (10,000)   | (10,000)  |
| 1983. 12. 31 | 230,000  | 50,000   | 90,000     | 370,000   |
| 資産再評價        | —        | 100,000  | —          | 100,000   |
| 純損失          | —        | —        | (500,000)  | (500,000) |
| 1984. 12. 31 | ₩230,000 | ₩150,000 | ₩(410,000) | ₩(30,000) |

〈追加情報〉

- 1983年中 울산會社가 원가의 130% 가격으로 언양會社에 판매한 商品中 ₩19,500이 언양會社의 期末在庫로 남아 있으며, 1984年初에 모두 외부에 판매되었다.
- 1984年初 언양會社는 원가 ₩95,000의 공상부지한 울산會社에서 ₩100,000으로 지분하였으며, 울산會社는 3年 이내에 공상을 완공할 계획이다.

〔물음〕

- 언양會社에 대한 投資計定을 울산會社의 個別會計에서 持分法을 적용할 경우, 期中去來를 分介하고 관련계정을 연도별로 제시하여라.
- 언양會社에 대한 投資計定을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처리한 경우, 期中去來를 分介하고 관련계정을 제시하여라.
- 울산會社가 非聯結從屬會社인 언양會社 이외에 聯結從屬會社인 포항會社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울산會社와 포항會社의 聯結財務諸表 작성시 個別會計에서 原價法을 적용한 언양會社에 대한 投資計定을 聯結會計에서 持分法으로 修正하기 위한 分介를 하여 보라.

〔解答〕

I. 울산會社의 個別會計에서 持分法을 적용한 경우

1. 持分法 適用—1983년도

- |                    |                  |
|--------------------|------------------|
| (1) (借) 投資 330,000 | (貸) 現金 330,000   |
| (2) (借) 投資 72,000  | (貸) 投資利益 72,000* |

\*₩90,000×80%=₩72,000

- |                   |               |
|-------------------|---------------|
| (3) (借) 現金 48,000 | (貸) 投資 48,000 |
|-------------------|---------------|

現金配當：₩60,000×80%=48,000

株式配當은 S社의 株主持分に 영향이 없으므로, 울산會社의 投資計定에 반영한 필요가 없다

- |                    |              |
|--------------------|--------------|
| (4) (借) 投資利益 8,000 | (貸) 投資 8,000 |
|--------------------|--------------|

언양會社의 剩餘金處分에 의한 現金配當 중 80%는 울산會社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聯結實體의 關係에서 社內留保된 것이지만, 任員賞與金은 社外流出되므로 기인식한 投資利益은 가장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利益剩餘金處分이 그 다음 인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利益剩餘金處分の 회계처리 방법(確定方法과 移越方法)에 따라 借記하는 과목(投資利益 또는 利益剩餘金)이 달라질 수 있다.

- (5) (借) 投資利益 10,000 (貸) 投 資 10,000  
 投資計定에 포함된 營業權償却,  $W(330,000 - 350,000 \times 80\%) \times 1/5 = W10,000$
- (6) (借) 投資利益 4,500 (貸) 投 資 4,500  
 内部去來에 인한 未實現利益의 제거  
 $W19,500 \times 30/130 = W4,500$ (down-stream, 전액 제거)

| 投 資              |                  | 投資利益            |                |
|------------------|------------------|-----------------|----------------|
| (1) 원가 330,000   | (3) 배 당 금 48,000 | (4) 상 여 금 8,000 | (2) 지분 72,000  |
| (2) 지분 72,000    | (4) 상 여 금 8,000  | (5) 상 각 10,000  |                |
|                  | (5) 영업권상각 10,000 | (6) 미실현이익 4,500 |                |
|                  | (6) 미실현이익 4,500  |                 |                |
| 12/31/83 331,500 |                  |                 | 83 투자이익 49,500 |

2. 1984년도(2차년도)

- (1) (借) 投 資 80,000 (貸) 資本剩餘金\* 80,000  
 \*취득일 이후 증가한 資本剩餘金도 利益剩餘金과 같이 投資計定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借) 投資損失 400,000 (貸) 投 資 400,000
- (3) (借) 投 資 4,500 (貸) 投資損失 4,500  
 전기 미실현이익의 당기실현(在庫資産去來)
- (4) (借) 投資損失 10,000 (貸) 投 資 10,000  
 營業權 償却(2차년도분)
- (5) (借) 投資損失 4,000 (貸) 投 資 4,000  
 84년도 중 도저매매 거래로 인한 미실현 이익의 제거(upstream, 부분제거)  
 $(W100,000 - 95,000) \times 80\% = 4,000$

| 投 資                 |                     | 資本剩餘金          |  |
|---------------------|---------------------|----------------|--|
| 12/31/83 331,500    | (2) 순손실(지분) 400,000 | (1) 제평가 80,000 |  |
| (1) 제 평가 80,000     | (4) 영업권상각 10,000    |                |  |
| (3) 실현이익 4,500      | (5) 미실현이익 4,000     |                |  |
| 12/31/84 2,000      |                     |                |  |
| 投 資 損 益             |                     |                |  |
| (2) 순손실(지분) 400,000 | (3) 실현이익 4,500      |                |  |
| (4) 상 각 10,000      |                     |                |  |
| (5) 미실현이익 4,000     |                     |                |  |
| 84 투자후실 409,500     |                     |                |  |

II. 운산會社의 個別會社에서 原價性 사용기-企業會社基準

1. 1983년도(1차년도)

- (1) (借) 投 資 330,000 (貸) 現 金 330,000
- (2) (借) 投 資 48,000 (貸) 受入配當金(損益) 48,000

(3) (借) 投 資 24,000

(貸) 株式配當金(揚益) 24,000

株式配當의 경우 企業會計基準에서는 그 券面額을 現金配當과 같이 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企業會計基準 第78條)

| 投 資      |         | 投資損益      |        |
|----------|---------|-----------|--------|
| (1) 위 가  | 330,000 | (2) 수입배당금 | 48,000 |
| (3) 주식배당 | 24,000  | (3) 주식배당금 | 24,000 |
| 12/31/83 | 354,000 | 83 손익     | 72,000 |

2. 1984년도(2차년도)

(1) (借) 投資資産評價損失 354,000

(貸) 投資(市價充當金) 354,000

1984. 12. 31. 울진會社의 帳簿價額

₩354,000

연양會社의 純資産價額 (₩30,000)×80%

(24,000)

하락한 금액(평가감 대상액)

₩(378,000)

연양會社의 財務狀態가 顕저하게 惡化되었으므로 이를 減價하여야 한다. 그러나 原價法을 적용한 경우에도 投資計定은 "0" 이하로는 減價할 수 없다.

Ⅲ. 聯結會計에서 연양會社에 대한 投資를 持分法으로 수정한 경우—聯結財務諸表基準

1. 持分法和 原價法

| 연양會社 資本의 變動   |           | 울진會社의 投資 |           |
|---------------|-----------|----------|-----------|
|               |           | 持分法(80%) | 原價法(손익)   |
| 1983. 1. 1    | ₩350,000  | ₩330,000 | ₩330,000  |
| 純利益           | 90,000    | 72,000   | —         |
| 現金配當          | (60,000)  | (48,000) | —         |
| 株式配當(₩30,000) | —         | —        | 24,000    |
| 任員償與金         | (10,000)  | (8,000)  | —         |
| 未實現利益         | —         | (4,500)  | —         |
| 營業權償却         | —         | (10,000) | —         |
| 1983. 12. 31  | ₩370,000  | ₩331,500 | ₩354,000  |
| 資産再評價         | 100,000   | 80,000   | —         |
| 純損失           | (500,000) | (40,000) | —         |
| 實現利益          | —         | 4,500    | —         |
| 未實現利益         | —         | (4,000)  | —         |
| 營業權償却         | —         | (10,000) | —         |
| 投資資産評價損失      | —         | —        | (354,000) |
| 1984. 12. 31  | ₩(30,000) | ₩ 2,000  | ₩ 0       |

2. 聯結修正分介\*

\*울진會社와 연양會社의 聯結財務諸表 작성기, 非聯結從屬會社인 인양會社에 대한 投資計定의 修正分介임.

(1) 1983. 12. 31(1차년도)

(借) {受入 配當金\* 48,000  
株式 配當金\* 24,000

(貸) {投 資 22,500<sup>①</sup>  
投資利益(持分法) 49,500<sup>②</sup>

① ₩354,000 - 331,500 = ₩22,500

② 울진會社의 장부에 계상된 수입배당금 시거

③ 持分法 적용시의 投資利益

(2) 1984. 12. 31(2차년도)

|     |   |                        |                |     |   |                         |         |
|-----|---|------------------------|----------------|-----|---|-------------------------|---------|
| (借) | { | 利益剩餘金 <sup>①</sup>     | 22,500         | (貸) | { | 投資資產評價損失 <sup>②</sup>   | 354,000 |
|     |   | 投                      | 資 <sup>③</sup> |     |   | 資本剩餘金(持分法) <sup>④</sup> | 80,000  |
|     |   | 投資損失(持分法) <sup>⑤</sup> | 409,500        |     |   |                         |         |

- ① 期初聯結剩餘金の 조정분개(권기말 연결 수정시행)
- ② W2,000-0=W2,000
- ③ 우산會社의 계번 장부에 제정된 評價損失의 제거
- ④ 持分法 적용시의 投資損益과 資本剩餘金

#### Ⅳ. 投資株式評價上的 問題點

##### 1. 期間損益의 不均衡問題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은 有價證券에 대하여 低價에 의한 任意評價를 許容하고 있지만 取得原價에 의한 評價를 原則으로 하면서, 다만 時價가 원지하게(100분의 30 이상) 低落하였을 때 반드시 評價減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原價로 計上된 有價證券에 대하여 數年에 걸쳐 漸次적으로 價値가 低落하여 어느 時點에서 評價減 범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評價損失 全額이 一時에 期間損益에 反映되게 된다. 그 結果 數年에 걸쳐서 累積된 損失을 어느 한 會計年度에 一時에 認識함으로써 期間損益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되는 問題點이 있다.<sup>(19)</sup>

##### 2. 時價 概念의 不明確性

有價證券은 移動平均法과 總平均法에 의해 결정된 原價와 決算日 현재의 時價를 比較하여 낮은 금액을 貸借對照表 價額으로 하는 低價主義에 의해 평가된다. 그런데 會計理論上 時價의 概念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經濟指標으로서의 市場價格은 기업거래에 있어서와 販賣去來에 있어서 다른 수 있으며, 또한 價格이 형성되는 去來對象物의 형태를 原初의 것, 現在의 것 또는 終局의 것에 따라 상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sup>(20)</sup> 企業會計基準上的 時價의 概念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會計理論上 資產은 기업에 대해서 정래에 効益을 주는 目的物로서 파악된다. 資產은 궁극적으로 有價證券, 外上支出金과 같이 現金化되는 것과 在庫資產, 有形固定資產 등과 같이 기업의 收益活動에 기여하므로써 費用化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現金化되는 資產은 販賣去來에서 형성되는 純現價値를 시가고 하여 평가하고 費用화된 資產은 소유하고 있는 것과 同一한 機能을 가진 資產을 同一한 市場에서 可調達한 경우의 原價인 購入去來상의 內取得原價(current replacement cost)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有價證券評價上 사용되는 구체적인 時價로서 決算期前 1月の 終價平均을 제시하고 있는데<sup>(21)</sup> 이는 販賣去來에서 형성되는 時價인지 購入去來에서 형성되는 時價인지가 불분명하다. 有價證券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現金화된 資產이며 現金화되기 위해서는 販賣去來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販賣去來에서 형성되는 時價인 純現價値(net realizable value)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Maurice Kendall이 말했듯이 여러 가지 實證的 研究에 의하면 株價는 時系列的으로 움직이는 株價變動은 獨立的으로 랜덤워크(random walk)에 의해서 형성되어 아무도 미래의 株價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證券市場에서 계속적으로 超過收益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sup>(22)</sup> 株價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賣出價格과 같이 現金化 時點에 있어서의 有價證券의 價値를 나타내 주지 못하고 決算

(19) 田沼村, "企業會計上 有價證券評價의 問題點", 會計와 稅務, 1985年 11月, p.139.

(20) 趙星河, 會計情報의 理論, 1983, p.254.

(21) 企業會計基準, 第92條 ③項

(22) Richard B. Caley & Stewart Myers,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McGraw-Hill Inc., 1981, pp.257~260.

權을 처분하였을 때 처분가액과 株權에 할당된 原價와를 비교하여 그 差額을 처분손이나 처분이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企業會計基準은 新株引受權處分益을 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原價割當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론상 원가를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실령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會計實務와 證券市場實態를 고려하건대 新株引受權을 처분함으로써 수취하는 그 처분가액 전액을 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는 것이 기준에 의한 會計處理로 생각된다. 新株引受權의 취득은 상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商法の 개정으로 新株引受權附社債를 分離型(新株引受權과 社債를 따로 영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하는 경우 社債所有者에게도 新株引受權(이러한 경우 株主의 新株引受權證과 구별하여 新株引受權證券) 處分益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은 이것도 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에도 마땅히 상내적 市場販賣價值法에 의하여 投資社債의 原價인무들 新株引受權證券에 할당하여야 할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投資株式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제시 받는 株式配當 문제이다. 株式配當은 株式所有比率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다만 소유구식수만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收益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商法에 따른 企業會計基準은 이를 營業外收益으로 규정하고 있다. 商法에 의하면 주식배당액은 전체배당액의 1/2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고, 現金配當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할 것 같다. 약간의 異說은 있지만 株式配當이 수취인의 利益이 아니라는 것이 通說이다.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株式配當은 어떻게 會計處理를 할 것인가? 基準은 株式配當으로 받은 株式의 券面額을 營業外收益으로 會計處理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차면세정항목을 投資株式으로 株式이 증가함에 따라 總平均法이나 移動平均法을 적용하여 貸借對照表額을 算定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株式配當을 受取人의 收益으로 처리하는 한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の 資本轉入에 의한 株式 및 出資의 취득은 資産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基準 제95조의 규정은 株式配當을 하는 會社에는 문제가 없으나 受取하는 會社의 식용에는 처하여야 하겠다.

## V. 要約과 結論

以上 本 研究에서는 美國과 우리나라에 대한 投資株式評價基準을 比較하였고, 投資株式評價方法 및 投資株式評價上の 問題點을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投資株式에 대한 評價基準을 美國과 우리나라는 따로 나누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投資株式에 대한 會計處理가 個別財務諸表의 聯結財務諸表에서 다른 評價方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② 投資株式評價方法을 살펴보았다.

- ④ 原價法
- ⑤ 低價法
- ⑥ 持分法
- ⑦ 市場價値法

특히 聯結財務諸表基準이 公表되었기 때문에 持分法에 많은 紙面을 할애했다.

③ 投資株式會計處理에 대한 綜合事例을 들었다.

本 事例은 특히 持分法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企業會計基準(個別會計)과 聯結財務諸表基準(聯結會計)에 대한 정확한 理解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④ 投資株式評價上の 問題點

- ④ 期間損益의 不均衡問題
- ⑤ 時價概念의 不明確性
- ⑥ 重要性에 대한 問題點

(26) 鄭鍾岩, 中級會計, 法文社, 1986, pp.269~270.

- ④ 負債支配力の 基準問題
- ⑤ 投資株式의 評價損失에 대한 認識問題
- ⑥ 企業會計基準에서의 持分投資에 관한 會計處理問題
- ⑦ 其他의 問題(合名會社·合資會社·有限會社 등의 出資金, 新株引受權 및 株式配當)

다음으로 앞에서의 考察內容을 중심으로 하여 向後 繼續的인 研究調査와 批判 및 檢證의 過程을 거쳐 보다 나은 企業會計基準과 聯結財務諸表基準이 定立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改善되어야 할 方向을 提小해 본다.

첫째, 流動資産에 포함되는 有價證券에 대하여는 總計基準에 의한 低價評價가 評價原則으로써 導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저한 時價下落時에만 適用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原價이하의 下落도 反映하여 毎決算期마다 繼續的인 評價가 適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發生主義會計에도 포함되고, 여러 期間에 걸쳐 累積된 損失이 한꺼번에 一時에 期間損益에 反映되는 不合理한 점도 解決될 것이다.

둘째, 投資資産에 포함되는 上場株式 중 投資 目的으로 保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流動資産중의 有價證券과 같이 總計基準에 의한 低價評價가 導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新株引受權會計處理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첫째로, 現行처럼 投資者의 추천만이 아니라 重要한 당사자로서 發行者추천의 會計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新株引受權과 관련된 公示義務事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겠다는 점 등이다.

네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個別會計에서 持分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個別會計에서도 投資株式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엄격한 의미의 原價法에 의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예로서 株式配當에 의한 投資計定の 증액이라든가 配當金受領額에 대하여는 그의 源泉이 취득 후의 것인지 取得 전의 것인지를 불분하고 收益으로 계상하는 것 등은 편의적인 會計處理方法으로 볼 수 있다. 個別會計에서 持分法이 적용되는 경우 投資計정이 실제까지를 떠나서 연결의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연결의 절차를 準用하기 때문에 聯結會計時的 변잡성을 덜어 줄 수가 있다.

다섯째, 上場株式이든 非上場株式이든 他企業을 支配할 정도로 또는 被投資會社의 經營政策에 重大한 영향력을 行使한 정도로 株式를 所有한 경우(例를 들면 企業會計基準上: 關係會社株式)에는 美國에서의 같은 持分法導入도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持分法은 被投資會社의 財務狀態의 변동에 따라 投資株式를 增減시키게 되므로 被投資會社에 純利益이 發生하는 경우에 投資會社에서는 未實現利益이 期間損益에 反映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未實現利益은 配當可能利益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傳統的인 保守主義原則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持分法이 시니고 있는 問題點을 다각적으로 研究 檢討하고 우리나라 經濟現實에 맞도록 하여 導入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投資株式會計處理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改善方向도 提示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試驗的인 斷片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會計情報利用者를 통한 會計情報의 有用性 觀點에서 實證的인 檢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實證的인 研究方法에는 證券市場에서 株價를 통해서 研究하는 방법과 잘 設計된 實驗室에서 行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앞으로 學界와 實務界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批判과 研究를 통하여 우리 企業會計基準과 聯結財務諸表基準이 안고 있는 여러 問題點을 多角的으로 分析 檢討하여 하나하나 改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企業會計基準은 우리 經濟社會의 會計實務을 이끌어가는 指針이기 때문에 問題點과 未備點을 攄임없이 改善·補完하고, 繼續的인 會計環境의 變化의 會計實務의 複雜, 多樣化에 부응하여 우리의 經濟社會가 要請하는 方向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朴鎬根, 高級會計學演習, 法文社, 1985.
- 2) 田裕柱, “企業會計上 有價證券評價의 問題點”, 會計의 稅務, 1985年 11月.